전공배정에관한규정

2006.03.01. 제정 2006.11.07. 일부개정 2009.03.01. 일부개정 2009.09.01. 일부개정
2010.11.01. 일부개정 2011.04.18. 일부개정 2012.08.01. 일부개정 2013.02.12. 일부개정
2013.08.09. 일부개정 2014.01.01. 일부개정 2015.07.10. 일부개정 2017.05.12. 일부개정
2018.02.14. 일부개정 2018.07.01. 일부개정 2021.06.01. 일부개정 2021.09.01. 일부개정
2022.08.09. 일부개정 2025.02.18. 일부개정 **2025.06.30. 일부개정**

<학사관리팀>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전공(학과) 배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1., 2015.7.10., 2018.2.14)

제1조의2(적용대상) 전공배정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8.2.14., 개정 2021.9.1., 2025.2.18.)

1. 2개 이상의 전공 또는 학과로 구성된 모집단위(학부) 소속 학생
2. 전공자율선택 모집단위(단과대학 모집단위와 자율융합공학부 및 자율전공학부를 포함한다) 소속 학생
3. 삭제 <2025.2.18.>
4. 건축·디자인대학 건축학과 소속 학생

제2조(배정시기) ① 전공배정은 1학년말 또는 2학년 말에 실시한다. 다만, 학사조직 개편에 따라 편제가 종료된 단위의 학생이 복학 또는 재입학하는 경우에는 복학 또는 재입학 시기에 실시하며, 배정단위별 배정시기는 지침으로 따로 정한다. (개정 2014.1.1., 2015.7.10., 2017.5.12., 2018.2.14., 2021.9.1., 2022.8.9., 2025.2.18.)

② 삭제 <2009.3.1.>

제3조(배정원칙) ① 전공배정은 배정대상 단위별로 정한 지원가능 학과(전공) 중에서 학생의 희망에 따라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1조의2제1호에 해당하는 학부 모집단위의 전공배정은 전공개설 최소인원의 제한을 둘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 사항은 지침으로 따로 정한다. (개정 2018.2.14., 2025.2.18.)

② 삭제 <2009.3.1.>

③ 전공배정 신청을 하지 않은 학생의 전공은 소속 학부에서 임의로 정한다. (개정 2021.9.1.)

④ 삭제 <2017.5.12.>

⑤ 삭제 <2017.5.12.>

⑥ 삭제 <2025.2.18.>

⑦ 학생이 진로 변경 등의 사유로 전공재배정을 희망하는 경우 소속 대학 학장 및 학부장의 승인을 받아 전공을 재배정할 수 있다. (신설 2025.6.30.)

제4조(배정신청 및 절차) ① 전공배정 대상자 및 전공재배정 신청자는 매 학기 지정기간에 전공배정 신청서를 소속 대학 또는 학부에 제출하고, 해당 학장 및 학부장이 배정한다. (개정 2021.9.1., 2025.2.18., 2025.6.30.)

② 전공배정 대상자가 해당 학기 성적을 인정받고 휴학하는 경우, 해당 학기에 전공배정 신청서를 제출하고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2., 2021.9.1., 2025.2.18.)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사조직 개편에 따라 편제가 종료된 단위의 학생이 복학 또는 재입학하는 경우에는 학과선택확인서를 학사관리팀으로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5.2.18.)

제5조(배정의 결정) 전공배정 및 전공재배정을 시행한 학장 및 학부장은 전공배정 결과를 교무처장에게 보고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4조제3항의 절차에 따른 경우 학생의 희망에 따라 총장이 허가한다. (개정 2011.4.18., 2012.8.1., 2018.7.1., 2021.6.1., 2025.2.18., 2025.6.30.)

부 칙

본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개정규정은 2006년 11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개정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개정규정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개정규정은 201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공배정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제3조 제4항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2013학년도 자율전공학부 입학생까지의 전공배정은 학생의 희망에 따라 대학내 전학과(전공)로 배정한다. 다만, 유아교육과와 간호학과는 배정할 수 없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공배정에 대한 경과조치) 부칙 제1항의 시행일에도 불구하고 2013학년도 자율전공학부 입학생까지의 전공배정은 학생의 희망에 따라 대학내 전학과(전공)로 배정한다. 다만, 군사학과는 배정할 수 없다.

부 칙

이 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본 시행일에도 불구하고 제1조의 대상자중 이미 전공배정이 확정된 자는 이 규정이 적용된 것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단, 본 시행일에도 불구하고 제3조의 배정원칙은 20

18년 2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5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5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